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결 정

제 목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관련  
의견표명

###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대통령에게,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이 유

#### I. 진정사건 조사결과

##### 1. 사건개요

- 가. 사 건 17진정0621500
- 나. 진 정 인 4·9통일평화재단(이사장 문정현)
- 다. 피 해 자 강○○ 등 77명

라. 피진정인 대한민국

## 2. 진정요지

1975년 당시 정권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이었던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이하 '인혁당재건위 사건'이라 한다)의 피해자 중 사형이 집행된 8명이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후, 같은 사건으로 무기·유기징역형을 받은 다른 피해자 및 그 유족들 역시 2008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1, 2심 판결에 따라 일부 배상금을 가지급받았는데, 2011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피해자들이 오히려 국가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할 처지가 되었다.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경매처분을 시도하면서 또 다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부당하다.

## 3. 판단

진정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은 부당 또는 위법하고, 국가가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존을 위협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진정의 원인된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것으로 재판에 관한 사안이며, 국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한다.

## II. 의견표명

###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국가폭력과 형사사법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스스로 조사기구를 발족하여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범죄의 실체를 확인하고, 법원 역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이 최초 국가폭력에 의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박탈에서 시작되어,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멸시로 인한 차별 등을 거쳐, 진실이 규명된 현재에도 국가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 국가폭력의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들의 보호와 권리 회복을 위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한 채 적절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 2.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특성과 피해상황

#### 가.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개요

1974년 중앙정보부는 대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도한 것과 관련하여 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이 인민혁명당 등과 결탁하여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발표하며 관련자 1,0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0명을 구속하였다. 이후 1975년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민혁명당 잔재 세력들이 1969년부터 세력을 규합하여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 사주했다고 발표하였고,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1975. 4. 8. 대법원은 인혁당재건위 관련자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1명에 대해 사형을, 16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징역 20년과 15년 등의 형을 확정하였다.

#### 나. 위법한 국가폭력에 의한 생명권 박탈과 신체의 자유 침해

1974년부터 1975년의 기간에 중앙정보부는 위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한 상태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혹독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했다. 또한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검찰관에게 자신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관과 수사관이 폭행과 협박을 하여 허위 자백을 부인하지 못하게 했다.

이와 같이 증거가 없이 허위 사실이 조작되었고, 구속부터 전 수사과정과 검찰부의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함은 물론 접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더욱이 공판조서까지 실제 진술과 달리 변형되었다고 의심받을 상황들이 있었다. 당시 관련자들은 누명을 쓰고 구속·수감기간에 가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국가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다음날 바로 8명의 사형을 집행하였고 이들의 최후 진술까지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다. 국가의 진실규명 방해와 연좌제 등 불이익 조치

사형 집행 이후 경찰은 사형수 중 일부 시신을 탈취하거나 유족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화장 처리를 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했고,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된 직후 1974년부터 1979년까지 가족과 주변인들이 벌인 진상규명과 구명운동에 대해서는 가족들을 무단 연행하거나 폭행, 위협하고 구명을 돕는 관계자를 구속하거나 강제출국 시키는 등 방해를 하였다.

사형이 집행된 8명 외의 관련자들은 1982년까지 7년 또는 8년 이상을 복역하면서 고문의 후유증을 앓았고, 일부는 수감 중 사망하였고, 생존자들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지만 이후에도 보안관찰 등으로 계속 감시를 받았다. 아울러 그들의 가족들도 가장의 장기간 구속과 수감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특수 공안사건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다. 일부 사례만 보더라도, 정○○은 수감 중인 1977년 고문후유증으로 신장 적출 수술을 받았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은 고문 등으로 대인기피증이 발병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전○○은 석방된 지 4년 만에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김○○의 부인은 교사로 재직 중 “공산주의자의 아내”라는 이유로 사직되었고, 이○○의 자녀 이△△은 연좌제로 중등교사 임용이 두 차례 좌절되고, 전○○의 자녀 전△△은 부친의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이밖에도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간첩”이나 “빨갱이”로 불리고, 그 부모, 배우자, 자녀나 형제자매 모두 수사기관의 감시 속에서 “빨갱이 가족”으로 지목당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학업이나 사업,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했거나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 라. 진실규명 이후의 상황

### 1) 구제조치의 경과

국가는 1974년 최초 피해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야 뒤늦게 인혁당재건위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활동에 착수하였다. 2002년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있었고,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은 스스로 사건의 진상조사를 벌인 후 2005년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물론 법원 등 국가체계 전체가 가동되어 발생한 피해로 결론짓고, 국민에 대한 사죄는 물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차원의 적절한 배상이 국가기관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2007년 8명의 사형수에 대한 재심이 시작되었고, 재심 등 절차를 통하여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국가폭력과 사법절차 남용에 의한 위법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진상규명 활동과 사과,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는 없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들은 통상의 형사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법원에 재심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법원의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까지 5년에서 7년이 걸렸고, 국가가 항소하지 않은, 사형수 8명에 대한 판결의 관련자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10년 동안 어떠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조력 없이 개인적으로 권리침해에 대한 회복을 시도하였다.

이후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사형수 8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위자료와 그에 대한 불법행위 시부터(정확하게는 피해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무렵인 1975. 4.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일부 금원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하였다. 국가는 상

고심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항변을 하였고, 대법원은 위 항변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 시(1975. 4. 9.)가 아닌 2심 변론종결일(2009. 11. 13.)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 2) 손해배상소송의 결과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은 77명이 2009년 법원 판결에 따라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으로 총 490억 원을 국가로부터 가지급 받았는바, 대법원 판결로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34년 늦추어짐으로써 판결이 확정된 2011년 당시에 이미 이들에게 211억 원의 초과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이후 2013년 국가(국가정보원)는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과 협의하여 피해자 77명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법원은 77명 모두 국가에 부당이득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 중 34명은 임의 변제하고 다른 34명은 재산이 없는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여 국가는 나머지 9명에 대해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예금채권 압류 등 절차도 진행하였다. 피해자들이 국가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2017년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할 시점에는 받은 금액의 95% 가량이 되어 있었고, 임의 변제한 피해자들은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집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부담한 반환금은 지급받았던 금액을 초과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기 전보다 생활이 악화되거나 이자 부담으로 빚이 쌓여가는 형편이 되었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김○○는 8년 이상의 수감생활 끝에 국가로부터 8억 원의 배상을 받았지만 30여년간 가족들의 생활고로 인한 빚을 갚고 난 상태

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심의를 통해 고문과 수감생활로 인한 정신장애의 상이 판정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나 형사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신청하였는데 오히려 받은 금액 이상을 반환해야 했다. 강○○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8년 8개월의 수감생활을 겪은 후 법원이 인정해준 위자료 원본액이 7억 원이었는데, 같은 해 법원은 수사기관이 1982년 이적단체로 조작하였던 오송희 사건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4년 8개월을 복역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원본액을 13억 원으로 인정하였다.

### 3.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의 한계

「헌법」 제28조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6호는 유죄판결이 파기되었을 경우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은 물론 그 관할 범위의 누구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국가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확인된 이상, 국가는 조직적으로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하였던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오랜 기간 의혹 제기와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29년 만에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이어 국가정보원이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보부 등의 수사과정 전반과 언론발표, 재판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불법행위들을 2005년 확인하였음에도, 1974년과 1975년 당시 형사절차상 불법의 실체를 확인한 것 외에는 정부의 어떠한 행정기관도 사건 관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구체적 상황과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는 피해자들이 2007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불법체포가 이루어진 시점은 1974년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였고, 만일 피해자들이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 해도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을 때 그 장애가 소멸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훨씬 도과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을 뿐이다<sup>1)</sup>. 결국 국가가 피해구제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유죄판결의 부당함에 이어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스스로 주장하며 다시 한 번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유엔총회가 2005. 12. 16.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sup>2)</sup>(이하 ‘유엔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해자의 정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 근본적 권리의 실질적인 침해 등을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직접적인 피해자의 직계가족과 피부양자, 피해를 돕거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민간인 집단희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등 결정).

2)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 Doc. A/60/509/Add.1, 16 Dec. 2005

나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한 유엔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위반행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원상회복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그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재판결과의 이행만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책임이 온전하게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재판이 법적인 피해구제의 한 방안인 점은 분명하나, 민사소송이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 중에서 인용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 등의 구제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피해구제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가는 스스로 조작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키고서도 조직적 은폐 시도를 지속했고, 구제조치를 외면했음은 물론,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자행 또는 방조하였다. 그 동안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감내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국가가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위와 같이 누적되어 온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현 상황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였던 국가가 올바르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형평과 정의에도 현저히 반한다. 국가는 지금이라도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가는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그 권한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밖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어떤 수단을 채택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통령에게,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14.

위원장      최 영 애

위원      정 상 환

위원      최 혜 리

위원      정 문 자

위 원 장 애 순

위 원 한 수 응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위 원 김 민 호